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지선 및 지정국도 추진 등 국도 간선기능 활성화 방안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도로국

2023. 2

담당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한명희	☎ 044-201-3875	Fax:044-201-5588
	담당 사무관 원일웅	☎ 044-201-3887	

- I. 과업지시서 1
- II. 제안서 일반사항 8
 - 1. 입찰참가자격 8
 - 2. 사업자 선정방식 9
 - 3. 제안 조건 9
 - 4. 제안서 작성방법 10
 - 5. 제안서 설명 11
 - 6. 제안서 평가 11
 - 7. 평가기준 12
- [별첨 서식] 13~28

I.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자율주행 등 정책지원을 위해 지선 및 지정국도 유형 세분화, 기대효과 마련 등 필요
 - * 간선기능 제고 등을 위해 지선·지정국도가 도입('10)됐으나, 지정된 사례가 전무
- 간선기능이 저하되고 관리가 소홀한 위임국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장래 국도 개설이 필요한 구간 실태조사 추진
- 도로 노선지정의 제도를 보완·정비하여 국도의 간선기능을 제고하는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

2. 과업의 내용

- ① 도로 종류, 노선 지정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
 - 해외 주요 나라의 도로 종류, 노선지정 절차, 방법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도로 관련 제도와 비교
 - 지선, 지정국도, 위임국도 등 도로 노선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도로의 간선 기능 향상을 위한 해외 주요 나라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도로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② 지선 및 지정국도 추진방안 마련
 - 후보구간에 대해 지선 및 지정국도로의 추진필요성, 효과 등을 검토
- ③ 위임국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위임국도에 대해 예산집행 및 관리현황, 교통특성 등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임국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④ 국도 간선기능 및 관리 제고방안 검토

- 국도 노선지정 이후 미개설된 구간, 도서지역으로 단절된 구간 등 간선기능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미흡한 국도구간에 대해 기초조사
- 해당 구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장래 개설이 필요한 구간의 노선지정 및 조치방안 등을 검토
 - * (예) 도로법 개정을 통한 (가칭)예정국도 개념 도입 검토

⑤ 도로 노선지정 및 변경 검토

- 국도 승격, 노선 시·종점 변경, 지선 및 지정국도 지정 등 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해 수요조사, 평가 등 추진

3.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총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4. 과업추진방식

- 관·학·연 등 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과업 결과에 반영토록 한다.
- 구체적인 일정 계획 및 회의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자문결과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 기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6.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변경하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를 준용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동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수급인)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여 인쇄하되, 주요 도면은 칼라 복사로 한다.
- 표지, 인쇄양식, 제출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고시기 및 방법

- **(착수보고)**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세부과업 수행항목, 과업수행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30일전에 보고하고, 최종 성과품은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30일 이내	5부	
최종보고서(안)	과업 종료 1개월 전	5부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시	20부	
최종보고서 USB	과업 종료시	1식	

- 과업 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등의 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인쇄시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발행 금지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조치 할 것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예정공정표

구분	추진계획(월)												공정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구 방향 설정	5													5
2. 도로 종류, 노선 지정 등에 관한 국내의 현황조사		5	5											10
3. 지선 및 지정국도 추진방안 마련				5	5	5	5							20
4. 위임국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5	5	5							15
5. 국도 간선기능 및 관리 체계방안 검토						3	4	4	4					15
6. 도로 노선지정 및 변경 검토								5	5	5	5			20
7. 성과품 작성										5	5	5		15
합계(%)	5	5	5	5	10	13	14	9	9	10	10	5		100
누계(%)	5	10	15	20	30	47	70	77	85	90	95	100		100

2.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II.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의 소유로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필요 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가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제출은 PDF파일)
 - 제안서 규격 :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요약본 : 1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방안 외에 보다 나은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가능함

5.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별도 통보)
- 설명회시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달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 제안서 평가시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 설명회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평가는 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6. 제안서 평가

- 본 영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1 -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최종기술점수는 공개됨
 -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지 함

7.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업체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 12 -

<별첨 1>

□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배점	
1	기관평가	○ 연구인력 보유수(10점)	정량평가	주 ¹⁾	10
2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정성평가	주 ²⁾	30
3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절성	"	주 ²⁾	20
4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	정성평가	주 ³⁾	20
5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회수에 따라 적용)	정량평가	주 ⁴⁾	10
6	기타	○ 사업수행능력(재무구조 등) (5점) ○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점)	정성평가	주 ²⁾	10
계					100

주¹⁾ 기관평가(10점)

- 연구인력 보유수(10점) : 9인이상(10점), 8인(8점), 7인(6점), 6인이하(4점)
 - * 공고일 기준으로 법률·경제·경영·통계·회계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사·박사 및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연구인력, 전문인력 보유수

주²⁾ 정성 평가(60점)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30점)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20점)
- 사업수행능력(재무구조 등) (5점)

- 13 -

-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주³⁾ 투입인력 평가(20점)

- 책임연구원 외 투입인력(2인)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 비계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 * 도로 건설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주⁴⁾ 입찰참가자격 제재 여부(10점)

- 0회 (10점), 1회 (5점), 2회이상 (0점)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5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 주1), 주3), 주4)는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영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 14 -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용역(연구)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현황 등 제시 제안사의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적을 제시	서식 - 2 서식 - 3
III. 사업 수행부분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수행전략 등 기술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연구결과와 기대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기술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IV. 사업관리부분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4
VI. 기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업제안서

용역명 : 지선 및 지정국도 추진 등
국도 간선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업체명 : (인)

1. 제안서 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4.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5. 용역(연구) 수행실적
6.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7. 합의각서
8. 보안서약서
9. 청렴계약서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 주) 1. 최근 5년간 본 과업 관련 용역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논문은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위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업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요 경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공고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호	입찰 일자	2023년 월 일
입찰건명			
<p>금번 2023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불입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p>			
<p>불입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p>			
년 월 일			
<p>입찰참가신청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p>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 일자	2023년 월 일
입찰진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지선 및 지정국도 추진 등 국도 간선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한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체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